

# 公正去來와 消費者保護法

장명완 / 經濟企副院 公正去來室 · 事務官

## 1. 開發年代 韓國經濟의 평가와 教訓

가. 開發年代 高度成長의 요인과 성과

### (1) 高度成長의 배경과 요인

— 量的 不均衡 成長 政策의 추구

• 戰略産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保護 · 支援하고, 海外競爭力의 導入을 억제하여 한정된 資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

— 輸出 드라이브 政策의 과감한 추진

• 國內市場의 협소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輸出主導型 成長政策의 채택

• 輸出增加率('62-'81) : 36.5%

— 원활한 外資導入

• 우리나라는 他 外國의 경우와는 달리 전통적 産業部門인 農業部門에서의 資本蓄積이 빈약

• 따라서 工業化推進에 부족한 國內貯蓄分을 外資로 充당하여 成長潛在力을 일깨워 주는 기폭제로 활용

— 其他

- 政府의 開發意志와 經濟政策 수행 능력
- 社會의 同質性과 높은 國民교육 수준
- 비교적 자유로웠던 世界經濟 與件

### (2) 開發成果

— 量的 膨脹

— 資質 향상

	1962 (A)	1983 (B)	B/A
國民總生産('80年價格兆원)	8.3	45.7	5.6倍
1人當 GNP(經常弗)	87	1,884	21.6倍
輸 出(經常弗)	0.9	232.0	256.7倍

• 生活水準의 향상

• 食料品費의 比重 감소와 耐久消費의 급증(엔겔係數: '63年 57.4% → '83年 38.8%)

• 産業構造의 高度化

• 農業中心의 후진적 産業構造에서 鎔工業 중심의 産業構造로 전환(鎔工業의 GDP 比重: '62年 16.4% → '83年 28.8%)

• 投資財源의 自立度 提高

• 投資率 자체도 높아지고 投資財源의 자립도도 향상

### 國民總投資의 構成

	〈經常價格, %〉	
	1962	1983
投 資 率	13.2(100)	27.8(100)
國 內 貯 蓄 率	2.9(25)	24.8(89)
海 外 貯 蓄 率	8.6(75)	2.9(11)

註: ( )內는 構成比로 統計上의 불일치는 按分 하였음

나. 70年代 後半의 經濟試鍊의 교훈

### (1) 經濟試鍊의 모습

— '70年代 후반에 겪었던 어려움은 과거에 겪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시련이었음.

• 높은 인플레이, 급격히 증가하는 國際收支 赤字, 「마이너스」 成長까지 기록한 成長率의 둔화, 미래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 등이 혼합된 어려움

註: 本稿는 1985년도 제 2차 전기용품품질관리교육에서 經濟企副院 公正去來室 장명완 事務官이 강의한 내용을 게재한다.

〈年平均：%〉

	'62~'78	'79~'81
都 賣 物 價	16.1	26.4
GNP成長率('80年價格)	9.9	2.3
實質輸出增加率	27.4	7.5
經常収支赤字(億弗)	11(1978)	44(1981)

(2) 經濟試鍊의 動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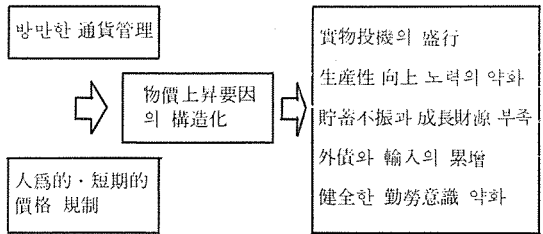
— 어려움의 직접적 원인을 보면 第2次石油波動, 國際高金利로 인한 利子支拂의 急增, 10.26事態後의 政治·社會的 불안, '80年代의 急작 등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음.

— 그러나 비슷한 環境條件임에도 불구하고 市場經濟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였던 競爭相對國은 우리보다 낮은 物價上昇率下에서 높은 經濟成長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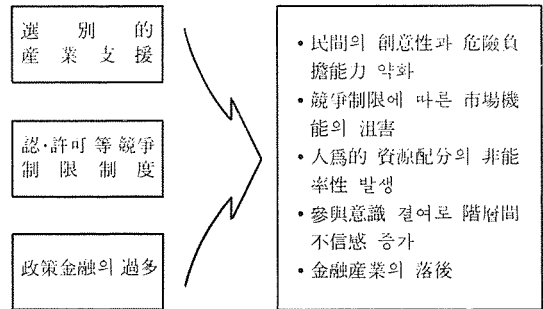
— 따라서 보다 根本的인 원인은 우리 經濟의 규모가 擴大되고 구조가 복잡화됨에도 불구하고 '70年代 中盤까지 지속하여온 政府主導下의 成長優先政策에 따른 構造的 문제점이 表出된데 있음.

• 「인플레이션」的 經濟成長政策의 부작용

• 通貨, 物價, 賃金, 輸出入, 換率 등 諸經濟變數의 惡循環의 上昇을 통한 經濟體質 약화



• 經濟規模의 확대에 따라 政府主導政策에 따른 非能率과 社會的 不信感 조래



• 競爭與件의 미비로 生産性 向上 노력의 결여

• 우리 經濟는 開發年代 成長 過程中 지나친 政府介入, 獨寡占의 深化, 海外競爭力의 導入制限 등으로 競爭與件이 미비.

競爭國의 經濟趨勢

(%)

	'78			'79			'80		
	韓國	台灣	싱가폴	韓國	台灣	싱가폴	韓國	台灣	싱가폴
經濟成長率 <sup>1)</sup>	9.7	13.9	8.6	6.5	8.1	9.4	-5.2	6.6	10.2
都賣物價 上昇率	11.6	3.5	1.7	18.8	13.8	14.4	38.9	21.5	19.6

註1 韓國은 '80年 價格, 台灣 및 싱가포르는 '76年 價格 基準

個別商品市場의 獨寡占化 現況

(%)

類 型	年 度		'77	'78	'79	'80	'81
	上位 3社	70% 以上					
獨寡占型	上位 3社	70% 以上	76.6	73.6	73.6	74.5	73.4
	上位 3社	50~70%	13.2	14.4	15.4	14.7	14.7
	小 計		89.8	88.0	89.0	89.2	87.8
競爭型	上位 3社	50% 未滿	10.2	12.0	11.0	10.8	12.2

이에 따라 競争을 통한 市場機能의 利點이 상실되어 生産性 向上 노력의 저하와 國際競争力 向上 沮害, 商去來秩序의 紊亂 等 問題點 발생

製造業 1人當 生産額 比較('78)

	單位	韓國	台灣	日本
生産額	經濟US弗/人	20,701	23,629	83,034
指數	韓國=100	100	112	401

資料：漢陽大學校 經濟研究所「韓國, 台灣, 日本의 製造業 生産性 分析」, 1984.

製造業部門 生産性的 輸出增加에 대한 寄與率 (%)

	韓國('67~'79)	台灣('67~'79)	日本('67~'78)
寄與率	23.3	32.4	49.4

資料：漢陽大學校 經濟研究所, 上揭書

### (3) 經濟試鍊의 教訓과 앞으로의 과제

— 우리 經濟는 工業化와 輸出指向間 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海外市場을 發掘으로 年 7% 정도의 成長을 지속함으로써 生活의 質을 높이고 政治的 안정을 도모하여야 함.

— 그러나 '80年代의 成長은 開發年代 成長政策의 副作用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質的 側面이 강조되어야 함.

- 「인플레이션」의 악순환 斷絶
- 通貨管理의 適正化, 總財政收支의 개선 등으로 安定基盤위의 成長追求
- 社會各界에서 價格引上, 賃金引上, 投機行爲 등을 억제하여 「인플레이 心理」 개선
- 外債增加의 억제 및 投資財源의 自立度 제고
- 貯蓄增大, 消費生活 合理化, 投資效率性 提高 등으로 輸入需要 및 外資需要의 節減
- 競争의 촉진과 政府의 保護 支援範圍의 축소

• 保護貿易主義 強化 등 악화되는 世界 經濟與件에 대응하고 安定的 成長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對應手段은 경쟁을 통한 生産성 향상과 國際競争力 提高에 있음.

#### — 綜合評價

• '80年代의 經濟成長은 安定政策과 競争促進政策의 두가지 수레바퀴를 통하여 이룩되지 않으면 안됨.

• 따라서 「인플레이션」 없는 成長을 위하여

• 政策의 合理性 提高 對外開放, 過保護의 시정, 競争의 촉진 등을 使命意識을 갖고 추진하며

•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不勞所得을 경원하는 民主市民으로서의 올바른 經濟倫理가 필요

## 2. 公正去來制度의 意義와 主要 內容

### 가. 公正去來制度의 基本 理念

— 公正去來制度는 資本主義市場 經濟體制를 바탕으로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확보하여 줌으로써, 經濟의 能率 및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 暢達하기 위한 제도임.

— 公正去來制度는 独占化 내지 獨寡占의 弊害를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, 資源의 효율적 配分과 生産性 향상을 통해 經濟的 厚生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제도임.

— 公正去來制度는 政府의 직접적인 經濟介入을 방지하여 個人의 經濟的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으로써 經濟的 民主主義의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임.

— 요컨대 公正去來制度는 기회 균등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經濟의 能率과 競争力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.

(公正去來法이 經濟憲法으로 불리는 이유)

### 賃金 코 스투 比較

(增加率: %)

韓 國			日 本			台 灣		
'75-'81	'82	'83	75-'81	'82	'83	'75-'81	'82	'83
17.2	9.0	△1.5	△0.5	3.5	△1.0	9.7	6.2	△3.9

— 公正去來法은 自由經濟의 基를을 지키는 基本法律

- 自由로운 경쟁 — 人爲的인 制限의 배제
- 公正한 경쟁 — 經濟力의 公正한 행사

나. 公正去來制度의 主要 內容

—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濫用行爲 금지

- 指定要件: 年間 國內總供給額 300億 以上인 品目으로 市場占有率이 1社 50%, 3社 70% 以上인 事業者(但, 5%未滿 事業者 제외)
- 指定現況: 71個品目, 136個 事業者
- 禁止行爲: 價格의 不當한 決定, 出庫調節, 他競爭 事業者의 事業活動 방해 등.

— 경쟁을 제한하는 企業結合의 制限

- 禁止主体: 納入資本金 10億원, 總資產 50億원 以上의 회사와 계열회사(株式取得의 경우 会社 이외의 個人, 非營利法人 포함)
- 禁止行爲: 일정한 去來分野의 경쟁의 實質的 制限을 초래하는 企業結合
- 申告義務 事項: 株式取得(10% 以上), 合併, 營業讓受, 会社 新設의 경우

• 다만 國際競爭力 강화와 産業合理化를 위한 경우 例外 認定

—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

- 競爭을 제한하는 모든 共同 行爲는 經濟 企圖院에 등록하여야만 실시 가능
- 不況克服 및 産業合理化를 위해 필요한 경우 例外 認定

— 事業者 團體의 競爭 制限 行爲 규제

- 事業者 團體를 통한 共同 行爲, 會員 및 非會員에 대한 營業活動의 制限 등의 금지
- 事業者 團體 設立事項의 經濟企圖院에의 등록 의무화

— 不公正去來 行爲의 금지

- 不當한 去來拒絶, 差別取扱, 拘束條件附去來, 排他條件附去來, 虛偽, 誇張廣告 등의 금지
- 不當한 景品類 提供行爲와 割引特売行爲의 제한

• 下都給 去來上의 不公正去來 行爲 금지

— 再販賣價格 維持 行爲의 제한

- 都·小売價格 指定行爲의 원칙적 금지
- 다만 著作物과 消費者 保護 및 流通構造 改善을 위한 경우 예외 認定

—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 制限

- 外資導入法上의 계약(借款, 合作投資, 技術導入契約)과 輸入 代理店 契約 및 長期輸入 契約의 原料供給者 指定, 輸出制限 등 不當한 條項 是正

— 競爭制限의 法令의 억제

- 競爭制限의 法令의 制定·改正 및 행정 처분에 대한 事前協議의 義務화

### 3. 討議課題

가. 低成長下의 公正去來政策

— 經濟의 低成長期 또는 沈帶期에는 公正去來法 運用 緩和 주장가능

- 談合(共同行爲)또는 競爭制限의 합병 등에 의해 價格安定 또는 引上을 도모하려는 意圖가 배경

— 公正하고 자유로운 競爭促進이라는 自由經濟의 「를」은 景氣의 好不況이나 經濟成長狀況에 좌우되는 것은 아님

- 엄격한 經濟環境에서야말로 公正競爭에 의해 企業의 활력을 발휘하고 經濟의 活性化도도 가능

— 歐美先進諸國의 경우 景氣沈帶期에 公正去來制度의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의 沈帶期에는 緩和動向이 없음

— 低成長期의 公正去來制度 緩和主張은 經濟 部門間 分배의 側面에서 販賣者側의 논리일 뿐임.

— 低成長期에 중요한 것은 각종 政府規制制度의 개선 완화와 業界의 生産性向上, 技術開發, 經營合理化 등 自救 노력임.

나. 中小企業保護와 公正去來制度

— 公正去來制度和 中小企業

- 公正去來法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에 원칙적으로 같이 通用되나

- 大企業의 經濟支配力으로부터 中小企業을 보호하는 것도 주요한 機能의 하나임.
- 公正去來法에 의한 中小企業 保護內容

- 大企業의 競爭制限의 株式取得·合併·營業讓受·會社設立 등 企業結合 금지에 의해 中小企業의 事業活動 위험 배제

-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濫用行爲 규제 (參

入制限, 他事業者, 事業活動 방해 등)

• 大企業의 去來相對方인 中小企業에 대한 우월적 地位濫用行爲 금지

• 下都給 去來上의 不公正去來 行爲 등

※ '85. 4. 1부터는 「下都給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」로 特別法을 制定하여 施行中임.

• 中小企業協同組合法 등에 의한 共同行爲 등의 認定

- 다만, 中小企業이라 할지라도 一般 不公正 去來 行爲나 부당한 共同行爲, 再販 行爲, 등은 法適用을 받음.

- 따라서 中小企業間에도 技術開發의 促進 등 競爭原則은 적용됨.

다. 産業組職의 競爭體制 전환

라. 談合行爲 監視 強化

마. 價格·品質爲主의 公正去來秩序 確立

바. 國內事業者의 對外交渉力 강화

사. 經濟法令의 개선

#### 4. 結 語

-우리가 이룩하려는 先進經濟로의 길은 開發 年代 經濟政策과는 그 質的 차이가 있으며 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.

• 第1의 跳躍: 성장에 최대의 가치가 부여

• 第2의 跳躍: 성장+안정+자립+신뢰

-企業의 社會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國際競爭 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社會的 倫理的 확립과 競爭을 통한 生産性 향상 등 自己發展 노력이 필요

• 競爭과 그 結果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 이고 자율적 意思決定과 責任負擔

• 技術開發, 生産性向上, 經濟專門化 등 體 質改善 노력 提高

•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, 談合 기타 不 公正去來 行爲의 자제

- 公正去來制度는 경쟁이라는 競技準則 (Rules of the Game)에 의해 經濟主體의 기능과 역 할을 再定立하고 國民經濟의 體質을 강화시키 고자 하는 것으로 自由·平等·能率이 강조되 는 經濟憲法임.

• 自由經濟體制는 「옛과 회초리」에 의해 운 영됨.

• 「옛과 회초리」의 機能이 적절히 작용되 도록 하는 것이 公正去來制度

-따라서 競爭過程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 는 슬기를 가짐으로서 公正去來制度의 기반을 확 산하고 産業의 競爭力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임.

